

#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내규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한다.

1. 학생의 학업 및 진로지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활동의 지도·육성에 관한 사항
3. 학생회 및 동아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4.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
5. 학생 상벌 및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
6. 학생의 사회적,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사항
7. 학생의 건강, 재정문제에 관한 지원
8. 학생상담시스템 운용 및 학생상담 시행
9. 학생상담 기본자료 분석(학업성취도, 유급, 그 밖에 문제점 분석자료)
10. 학생상담기록 작성 및 보관
11. 한의사국가고시 대비 학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학생지도 및 상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
**제3조(조직)** 학생지도를 위해서 학년 담임교수제와 개인 상담 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. 학생상담센터를 본교에 두며, 필요할 경우에는 한의과대학 자체에 학생상담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 위원은 부학장, 한의학과장, 한의예과장, 학생상담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전임교수 중 한의과대학장이 임명한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결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의과대학 학생회장,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학생회장을 위원회에 배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부학장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간사)** ① 위원회 간사는 한의예과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

**제7조(학년 지도교수)** ① 학년별로 교육과정에 맞게 4인 이내의 담임교수로 구성한다.

② 학년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학년 담임교수는 유급생 또는 성적부진학생들의 지도에 관한 보고서를 학기별 최소 1회 제출한다.

**제7조2(개인 상담지도교수)** ① 개인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학업, 생활, 진로 상담 등을 담당한다.

②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
**제8조 (학생상담센터)** ① 학생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,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1명 이상, 상담 담당교수, 한의학과 조교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위원회의 학생상담을 주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시행하며, 상담결과는 학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회의는 학기당 1회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)**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